

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380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9. 2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('22. 7월)에 따라 자체계획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한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여 정보화 분야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 규정 삭제(안 제4조제3항)
 -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·변경시
- 나.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(안 제6조 ~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나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(※ 붙임)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라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2. 8. 10. ~ 8. 30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3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 - 4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 - 5) 갑질영향심사 : 개선의견 없음
 - 6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·확정한다.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제6조(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.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 및 분석 3.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</p>	<p>제4조(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

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
1.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2.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실·국장
3. 지능정보화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<삭 제>

<삭 제>

한다.

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.

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-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('22. 7월)에 따라 회의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자체계획으로 기능대체가 가능한 위원회의 설치·운영 근거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지능정보화담당관 유성필